

인천지방법원 2015. 6. 12 선고 2015가단10324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 2015. 6. 5.

판결 선고 2015. 6. 12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 별지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①, ②, ③, ④, ⑤, ⑥,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ㄱ)부분 184㎡ 지상 경량철골 및 판넬조 판넬지붕 2층 주택 1동을 철거하고,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판사최희정

별지